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-9호

「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22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1. 개정이유

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이 개정됨에 따른 일부개정 사항 반영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 (안 제13조)
- 나. 외부 강의 신고의 시기를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 (안 제13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27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shjgoods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